

부산지방법원 2021. 4. 23 선고 2020나551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4. 23 선고 2020나55190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1134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2021. 3. 26.

판결 선고2021. 4. 23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7. 9. 선고 2019가단1134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480,7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
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을 운송시킬 목적으로 호퍼트레일러(새시)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안전교육에 불참하여 2019. 6. 10.부터 피고에게 배차할 수 없게 되어 무상으로 임대한 호퍼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9. 6. 10.부터 2021. 1. 14.까지 호퍼트레일러를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손실 23,480,730원(= 1일 휴차료 40,138원 × 585일)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운송 목적으로 호퍼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 및 피고가 운송을 거부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운송 거부를 이유로 호퍼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와 원고의 이사인 C이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운수업을 하였다는 것인데, 을 제1, 3,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이 원고 회사의 차량, 기사 및 현장관리를 담당한 사실, C이 피고에게 호퍼트레일러의 매매를 소개하여 피고가 판매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호퍼트레일러에 하자가 발견된 사실, 이에 C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이 반환될 때까지 원고가 보유한 호퍼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권현영

판사조운정

판사홍준서